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75
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2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11월 14일, 이창섭, 박운기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11월 21일 상정,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창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.
-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, 위원회의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따라서,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회 회의출석을 회의장소에 직접 출

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제9조제4항 중 “출석으로”를 “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”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[표]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심의회 운영) ①~③ (생략)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<u>출석으로</u>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⑤ (생략)	제9조(심의회 운영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출석(회의 장소에 <u>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</u>)으로 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

- 현행 조례 제7조1)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, ‘기금운용계획의 수립’, ‘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’, ‘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’ 등을 심의하고 있는데,
- 최근 3년간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,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서면심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례의 원 취지와는 다르게 ‘출석’이 대면출석이

1) 제7조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
2.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
3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
4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아닌 서면출석으로 준용된 측면이 있음(〔표〕 참조).

[표] 최근 3년간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회 운영현황

심의 종류	회의 일시	안 건 명	요청 부서	심의 결과	각종수당 지급현황 (천원)	심의위원 참석수 (참석률)	비고
출석	2015.4.28.	○ 2014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	도로관 리과	원안가결	참석수당 (300)	10명 (83%)	
출석	2015.10.8.	○ 2014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성과분 석 보고 ○ 2015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○ 2016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 획안	도로관 리과	원안가결	참석수당 (400)	10명 (83%)	
서면	2015.12.9.	○ 2015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	도로관 리과	원안가결	참석수당 (200)	10명 (83%)	
서면	2016.3.7.	○ 2015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	도로관 리과	원안가결	참석수당 (200)	11명 (92%)	
서면	2016.11.4.	○ 2015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성과분 석 보고 ○ 2016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○ 2017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 획안	도로관 리과	원안가결	참석수당 (200)	9명 (75%)	
서면	2017.3.7.	○ 2016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	도로관 리과	원안가결	참석수당 (200)	10명 (83%)	
서면	2017.5.8.	○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안	도로관 리과	원안가결	참석수당 (200)	9명 (75%)	

- 따라서 개정안 취지와 같이 양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대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.
- 다만, 개정안이 ‘출석’이라는 용어에 괄호를 이용하여 ‘회의장소

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'라는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있으나 '출석'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전적으로 볼 때 '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함'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굳이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,

-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서면심의 가능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현행 '출석'에 의한 대면심의를 서면심으로 가름한 것은 현행 조례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.
- 따라서, 출석이 아닌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단서규정을 설치하여 절차의 합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- 서울시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의 대처, 그리고 경미한 사항 및 천재지변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례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.
- 결과적으로, 동 개정안 취지는 적극 공감할만하며, 다만 출석에 의한 대면심의만 가능토록 할 경우에 행정의 경직성과 긴급사안에 대한 원활한 대처의 어려움, 그리고 경미한 사항까지 과도한 행정력 낭비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,
-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.

[표] 개정안 대비 수정안 비교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9조(심의회 운영)	제9조(심의회 운영)	제9조(심의회 운영)

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</u>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출석으로</u> ----- ----- 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--	---	---

- 참고로, 중앙정부의 「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 12조2)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,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인정하고 있으며,
- 「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3)에서는 소규모 또는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서면심사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.

2) 제12조(서면의결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1.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
 2.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
 3.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
 4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3) 제8조(위원회의 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행정의 유연성과 긴급사안에 대한 원활한 대처를 위해 서면심의회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 필요.

9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7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출석에 의한 대면심의만 가능토록 할 경우 행정의 경직성과 긴급 사안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우며, 경미한 사항까지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서면심의가 가능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(안 제9조제4호).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</p> <p>제9조(심의회 운영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</p> <p>제9조(심의회 운영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<u>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</u>으로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</p> <p>제9조(심의회 운영)</p> <p>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</p> <p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(심의회 운영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(심의회 운영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 한 사안인 경우</u></p> <p><u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